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3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 장동혁 • 유상범 • 조배숙

곽규택 · 송석준 · 서범수

성일종 • 김소희 • 김도읍

박덕흠 • 이인선 • 인요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 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보급하고(안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 조사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사회통합지수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 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지수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	
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제9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재한외국인, 귀화자
	의 사회통합수준 조사
<u>2</u> . ∼ <u>6</u> . (생 략)	<u>3</u> . ~ <u>7</u> .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
	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9조의2(사회통합지수 등) ① 법무
	부장관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
	•보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
	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
	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 <u>다.</u>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지수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